



기타 유럽국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글·최진만 부회장 Goldroad 21(주)

EU와 같은 대륙을 형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국가간의 무역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1993년 1월 1일에 EU EFTA가맹의 1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 경제영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조약을 발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EFTA의 대부분의 가맹국이 EU에의 가맹을 신청하고 있었던 사정의 영향으로 EU지침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진행되어 1993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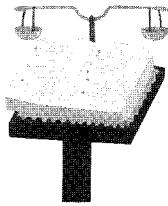
특히 EU에서도 논란을 거쳐 가맹국의 국내법의 선택조항으로 위임된 세 가지 쟁점, 즉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할 것이지 여부 및 동일결합제조물에 기인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설정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1. 오스트리아

얼마 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1811년에 제정된 민법전(ABGB)이 결합제조물의 “희생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책임근거로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1988년 7월 1일 이래 EU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된 [결합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Gesetz vom 21. Jänner 1988 über die Haftung für ein fehlerhaftes Produkt)이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우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망손해, 신체나 건강침해 혹은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결합제조물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만일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판매자 등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도 제2차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재산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제조



물 그 자체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산손해가 면책액인 5,000뮐링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EU지침과 달리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재산손해를 제조물의 개인적 사용이나 소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훼손에 의한 손해”(Schaden durch die Beschädigung einer Sache)를 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재산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도 제조물 책임이 적용된다.

제조자란 최종제조물의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 및 구성부품의 제조자, 명칭이나 상표 기타 특징에 의하여 제조자로 표시된 표시제조자를 의미한다. EU지침이 “전기”를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전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제조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차가공이 되지 아니한 농산물·축산물이나 임산물·수렵물은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EU지침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규정에 의하여 배상의무자 사이의 구상

관계와 제조물책임에 의한 배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보험 등에 의하여 배상자력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 핀란드

핀란드는 1990년 8월 17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1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핀란드 제조물책임법도 역시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 혹은 손해발생시 통상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의 배상을 그 규범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1차 농산물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하여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동시에 재산손해에 대한 면책액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발위험의 항변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제조물을 업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의 결여가 당국에 의하여 고지된 강제적 명령에 제조물을 적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에서는 손해를 야기한 안전성의 결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항변할 수 있다.



한편, 부품제조자는 부품에 관한 안전성의 결여가 부품을 주문한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하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

3. 스웨덴

얼마전까지 스웨덴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스웨덴의 제조물책임법도 통과되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역시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제조물책임법과 마찬가지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부정하고 있다. 1차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외에, 동일결합의 제조물에 기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예외적으로 설정하여 피해자 1인에 대하여 스웨덴 화폐 200만 크로네, 동일의약품에 의한 피해는 7,500만 크로네의 책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의약품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제도를 설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 동유럽국가 등 구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 국가는 현재 러시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3나라뿐이다.

1991년 말에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은 해체되었지만 그 후의 신체제에서도 구 소비에트연방 하에서 제정된 법률은 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1991년 5월의 소비에트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과 소비에트연방민법이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의 1992년 2월에 러시아연방공화국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전체 44개조로 된 러시아연방 소비자권리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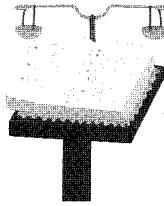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의약품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노무와 용역 등의 서비스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책임 및 면책

제품의 매도인 즉 제조자나 도급인은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매도인이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



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또는 그 손해가 본 법률이 정한 이유에 기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된다.

또한 매도인이 당해 손해는 불가항력 또는 소비자에 의한 사용, 보관방법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3) 개발위험의 항변 불채용

제조자는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진다.

4) 정신적 손해의 배상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5) 책임기간 및 소멸시효

제품의 결함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의 사용기간 중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후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

5. 형가리

헝가리는 1993년 3월 6일에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을 성립하여 그것을 다음해인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은 조문의 순서가 일부분 변경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 EU지침의 내용에 거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헝가리가 1991년에 EU와의 사이에 체결한 준가맹협정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을 EU지침에 가깝도록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EU지침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EU지침에서는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것에 더하여 의약품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대상 외로 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2) 개발위험의 항변

결함의 의의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설명, 판매개시의 시기가 과학기술의 수준에 비추

어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책임주체

결함을 가진 제품의 제조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 EU지침 3조 3항은 제품의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를 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품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자가 서면으로 청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조물책임을지는 것으로 한다.

기타 유럽국가의 입법현황

No	국 가	입법시기 또는 상황	입법형식	선례조항의 차이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원회 방법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여부	
1	오스트리아	1988. 1. 21 제정 1988. 7.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 외	채 용	없음	EFTA
2	노르웨이	1988. 12.23 제정 1989.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적 용	불채용	없음	EFTA
3	핀란드	1990. 8. 17 제정 1991. 9.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적 용	불채용	없음	EFTA
4	아이슬랜드	1991. 3. 20 제정 1992.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적 용	채 용	7,000만 ECU 이상	EFTA
5	스웨덴	1991. 12.17 제정 1993.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적 용	채 용	없음	EFTA
6	러시아	1992. 2. 07 제정 1993. 2. 07 시행	소비자권리 보호법	제 외	부 정	없음	
7	리히텐슈타인	1992. 11.12 제정 (시행불분명)	.	제 외	채 용	없음	EFTA
8	스위스	1992. 10.09 제정 1994.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 외	채 용	없음	EFTA
9	헝가리	1993. 2. 16 제정 1994. 1. 01 시행	제조물 책임법	제 외	채 용	없음	